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8-62
----------	---------

제출년월일 : 2018년 11월 일
제출자 : 강서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나. 적용범위(안 제3조)
- 다.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 ~ 제6조)
- 라. 지원 및 지원대상(안 제7조 ~ 제8조)
- 마.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1) 사회보장기본법
-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3) 긴급복지지원법

나. 예산조치 :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2018. 9. 21. ~ 10. 11.)
-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4) 사전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자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이웃·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연고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소를 둔 1인 가구(거소지가 강서구로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가구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5조의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3.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4. 방문간호서비스
5. 일자리 알선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8.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 제7조의 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1인 가구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제도적 기반 조성 및 근거 마련이 필요함은 물론, 서울특별시에서 조례 제정 공포 후 자치구별 조례 제정 협조 및 권고 요청이 있어 제정하는 조례로 상기 미첨부 근거 규정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작성은 생략함

4. 작성자

성 명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장 정 영 익 (담당 : 사회복지7급 최정순)
연락처	02-2600-6711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사유

-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적용범위(안 제3조)
-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 ~ 제6조)
- 지원 및 지원대상(안 제7조 ~ 제8조)
-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검토의견

- 동 제정안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복지사각지대 취약가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평가번호	2018-40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7급	성 명	김현봉
입안주무부서	복지정책과	통보(조치)일		2018. 9. 27.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정안 전부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8A서울강서041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명	최정순	전화번호 02-2600-671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8년 9월 2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복지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의 기반 조성 ○ 법령에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이 반영된 조항이 없으며, 성별 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에 있어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p>「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성별통계 반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p>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p>「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2018년 10월 04일</p> <p>서울특별시강서구생활복지국장</p> <p>(담당자/연락번호 : 김화옥/02-2600-6762)</p> <p>복지정책과장 귀하</p>			